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‘24.2.13., 시행 : ’24.8.14.)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,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급경사지 관리대상 확대(안 제2조)

- 1)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같이 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법정 기준*에 미달하는 비탈면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**가 증가하고 있음.

* (자연비탈면) 경사 34°, 높이 50m 이상,

(인공비탈면) 경사 34°, 높이 5m, 길이 20m 이상

** 2023년 ○○시 비탈면 붕괴(1명 사망) : 높이 4m, 경사 40°, 연장 53m

- 2) 주택 등 건축물과 이격거리가 3미터 이내로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인공비탈면은 높이 기준을 3미터로 강화함

나. 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규정(안 제2조의3)

1) 전국의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, 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

2)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

*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, 유형별 분류, 위험인자 등

** 현장 직접조사, 자료·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, 항공기·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

다.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위탁(안 제15조의6)

1)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,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

2)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, 관리기관의 업무 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

구 분	기관별 위탁 가능 업무	비 고
행안부장관	① 급경사지 실태조사(제5조의2) ②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·시공기준 도서 작성(제13조의2)	
시·도지사	① 급경사지 실태조사(제5조의2)	
시장·군수·구청장	① 급경사지 안전점검(제5조) ②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(제6조) ③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(제20조)	
관리기관	① 급경사지 안전점검(제5조) ②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(제6조)	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비탈면”을 “비탈면(다만, 주택 등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높이를 3미터 이상으로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등)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급경사지의 위치·규모
2. 급경사지의 유형별 분류
3. 급경사지의 위험인자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자료·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, 항공기·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15조의6부터 제15조의8까지를 각각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9까지로 하고,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6(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의2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
2.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점검
2. 법 제6조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
3. 법 제20조에 따른 급경사지 현황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

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점검
2. 법 제6조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

⑤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이 제4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급경사지의 정의)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급경사지의 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,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,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<u>비탈면</u>	1. ----- ----- ----- <u>비탈면(다만, 주택 등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높이를 3미터 이상으로 한다)</u>
2. ·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2. · 3. (현행과 같음) <u>제2조의3(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등)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급경사지의 위치·규모</u> <u>2. 급경사지의 유형별 분류</u> <u>3. 급경사지의 위험인자</u> <u>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</u>

<신 설>

자료·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, 항공기·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15조의6(업무의 위임·위탁) ①

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의2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

2.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점검

2. 법 제6조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

<u>제15조의6 ~ 제15조의8 (생략)</u>	3. <u>법 제20조에 따른 급경사지 현황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</u> ④ <u>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1. <u>법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점검</u> 2. <u>법 제6조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</u> ⑤ <u>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이 제4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u> <u>제15조의7 ~ 제15조의9 (현행 제15조의6부터 제15조의8까지와 같음)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57